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강형민  
전화 02-2204-4201

보 도 자 료  
2020. 12. 21.(월)

제 목 **정부 지원 가장 복지지원사업 사기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관련업체 실명공개를 위해 당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쳤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공공기관 유사명칭의 단체를 설립한 후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하여 **자격증 사기 및 복지서비스 사기행위로 약 17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하여, **주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 피고인들은 임의로 복지 관련 자격증을 신설한 뒤, 정부 지원 복지사업에 필수적이고 유일한 **공인 자격인 것처럼 기망**하여 해당 자격 신청자 **428명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업 등 **외부 예산 지원을 받아 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4,020개 업체로부터 14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

● 검찰은 개별 고소사건들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적극적인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고소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등,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하여 서민 및 중소기업체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었음

# 1

## 피고인

- 피고인 A○○(45세, (주)한국기업복지의 대표)
- 피고인 B○○(55세, (주)한국기업복지 부회장, 한국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피고인 C○○(56세, (주)한국기업복지 영업부사장, 한국동반성장(주) 대표)
- 피고인 D○○(55세, (주)한국기업복지 이사)
- 피고인 E○○(39세, (주)한국기업복지 이사)
- 피고인 F○○(42세, (주)한국기업복지 이사)
- 피고인 G○○(37세, (주)한국기업복지 이사)
- 피고인 H○○(37세, (주)한국기업복지 이사)

# 2

## 주요 공소사실 요지

- 자격증 관련 사기 및 자격기본법위반
  - 공모하여, '16. 3. ~ '20. 5.경 '기업복지지도사 자격이 공인 자격이고, 기업복지 관련 국내 유일의 자격이며, 복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자격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교육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함
  - (피고인 A○○) '16. 3. ~ '18. 2. 주무장관 등록 없이 임의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261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관리·운영
- 복지몰 가입업체 관련 사기
  - 공모하여, '18. 8. ~ '20. 4.경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근로자 1인당 자부담금 20만 원만 내면 290만 원 상당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4,020개 업체로부터 합계 14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

※ 별첨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결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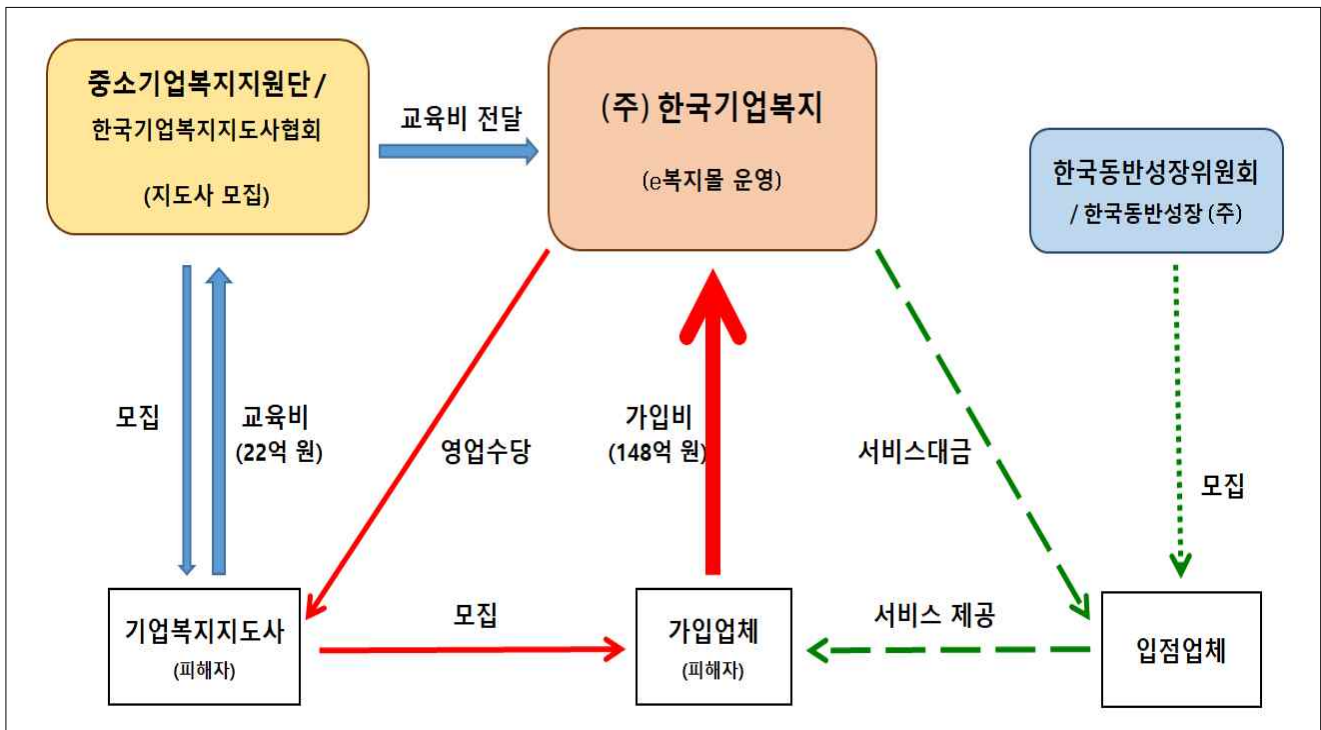
### 3

## 수사 경과

- '20. 3. ~ 9. 고소장 47건 접수(검찰 접수 43건, 경찰 접수 4건)  
※ 고소인 261명, 피해금액 약 31억 원
- '20. 7. ~ 11. 검찰 조사과 지휘사건 및 경찰 사건 순차 송치
- '20. 10. ~ 11. 검찰, 계좌추적·압수수색·관련자 조사 및 추가 범행 인지  
※ 추가 피해자 4,186명, 피해금액 약 139억 원 부분 인지
- '20. 12. 3. A○○ 사전구속영장 발부(12. 1. 청구)
- '20. 12. 17. 공범 3명 추가 인지
- '20. 12. 18. 사건처리(1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2명 혐의없음 처분)  
※ 피고소인 중 2명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

### 4

## 범행 구조



- 피고인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공공기관인 듯한 명칭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활용하였음
  - (주)한국기업복지 외 나머지 단체들은 외관 창출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독립된 실체 없이 사실상 (주)한국기업복지의 일개 부서 역할만 하였고, 예컨대 지도사들에 대한 영업수당이나 입점업체에 대한 서비스 대금도 (주)한국기업복지에서 직접 지급하였음

- △ 본건 사업의 가장 핵심인 (주)한국기업복지(복지몰 운영 업체)의 원래 명칭은 (주)이비서였으나,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한국기업복지로 변경
- △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은 기업복지지도사를 모집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지도사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받아 (주)한국기업복지로 전달
- △ ‘한국동반성장위원회’, ‘한국동반성장(주)’은 (주)한국기업복지 운영 복지몰에 입점하여 가입업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점업체)들을 모집하기 위한 단체로, 입점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은 뒤 (주)한국기업복지로 전달

- 피고인들은 기업복지지도사를 ‘지원팀장’과 ‘사업부장’의 2단계 구조로 관리하면서 지도사 모집수당 및 가입업체 영업수당을 미끼로 신규 지도사를 모집하도록 하고, 이들을 복지몰 가입업체 영업업무에 투입시켜 결국 피해자인 지도사를 이용하여 2차 피해자(가입업체)를 양산함

- △ ‘사업부장’은 하위에 신규 지도사 모집시 교육비 등의 10~20%를 수당으로 취득
- △ ‘지원팀장’은 가입업체 모집시 해당업체 직원 1인당 25,000원의 수당을 취득하고, ‘사업부장’은 하위 지원팀장의 수당 중 10,000원을 취득

- (주)한국기업복지는 원래 입점업체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입점비를 ‘한국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돌려서 받는 것 외에 외부 지원을 받은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마치 별개의 외부기관에서 지원받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이러한 입점비마저도 피고인들이 홍보한 외부 지원 예산(25억 원~75억 원)에 턱없이 못 미쳤음

## 5

## 수사 결과

- 피고인들은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계형 영업직에 종사하는 서민들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기반이 빈약한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해당 서민들과 중소기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
- 피고인들이 임의로 신설·운영한 ‘기업복지지도사’ 자격은 2018. 3. 2.에서야 민간 자격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그 후로도 공인된 적은 없음
  -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면 국가 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고, 동법 제19조에 의하면 민간자격의 신뢰를 확보하고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부장관이 ‘공인’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음
- 본건 사업은 복지몰 가입비에 비해 훨씬 높은 단가의 서비스를 약속했고 심지어 해당 가입업체를 모집해온 지도사에게 모집수당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지원이나 다른 이익사업 없이는 적자 구조로, 결국 나중에 들어온 가입비로 앞서 가입한 업체의 복지서비스 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음
- 검찰은 산발적으로 접수된 수십 건의 고소 사건을 병합하고 적극적인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고소금액(31억 원) 외에 추가로 139억 원 상당의 피해를 확인하고, 피고소인 외 공범 3명을 추가 인지하여 최종적으로 1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의 전모를 밝혀 복지를 미끼로 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함 ☑

[별첨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결과

연번	피고인(나이) 직위	공소사실	처분결과
1	AOO (45) (주)한국기업복지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D,E,F,G,H 공모), 2016. 3.~2020. 5.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기업복지지도사 교육비 명목으로 약 22억 원 편취하고, 공인자격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 [사기, 자격기본법위반]</li> <li>- (A,B,C,D,E,F,G,H 공모), 2018. 8.~2020. 4. 피해자 4,020개 업체로부터 복지물 가입비 명목으로 약 147억 원 편취[사기]</li> <li>- 2016. 3.~2018. 2. 등록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인 기업복지지도사 자격을 신설[자격기본법위반]</li> <li>- (A,B 공모), 2018. 12.~2020. 2.까지 A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약 1억 원 횡령[업무상횡령]</li> </ul>	구속 구공판
2	BOO (55) (주)한국기업복지 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D,E,F,G,H 공모), 2018. 5.~2020. 5. 피해자 270명으로부터 기업복지지도사 교육비 명목으로 약 8억 7천만 원 편취하고, 공인자격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 [사기, 자격기본법위반]</li> <li>- (A,B,C,D,E,F,G,H 공모), 2018. 8.~2020. 4. 피해자 4,020개 업체로부터 복지물 가입비 명목으로 약 147억 원 편취[사기]</li> <li>- (A,B 공모), 2018. 12.~2020. 2.까지 A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약 1억 원 횡령[업무상횡령]</li> </ul>	불구속 구공판
3	COO (56) (주)한국동반성장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D,E,F,G,H 공모), 2018. 8.~2020. 4. 피해자 4,020개 업체로부터 복지물 가입비 명목으로 약 147억 원 편취[사기]</li> </ul>	"
4	DOO (55) (주)한국기업복지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D,E,F,G,H 공모), 2016. 3.~2020. 5.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기업복지지도사 교육비 명목으로 약 22억 원 편취하고, 공인자격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 [사기, 자격기본법위반]</li> <li>- (A,B,C,D,E,F,G,H 공모), 2018. 8.~2020. 4. 피해자 4,020개 업체로부터 복지물 가입비 명목으로 약 147억 원 편취[사기]</li> </ul>	"
5	EOO (39)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D,E,F,G,H 공모), 2018. 8.~2020. 5. 피해자 205명으로부터 기업복지지도사 교육비 명목으로 약 8억 6천만 원 편취하고, 공인자격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 [사기, 자격기본법위반]</li> <li>- (A,B,C,D,E,F,G,H 공모), 2018. 8.~2020. 4. 피해자 4,020개 업체로부터 복지물 가입비 명목으로 약 147억 원 편취[사기]</li> </ul>	"
6	FOO (42) (상동)	상동	"
7	GOO (37) (상동)	상동	"
8	HOO (37) (상동)	상동	"